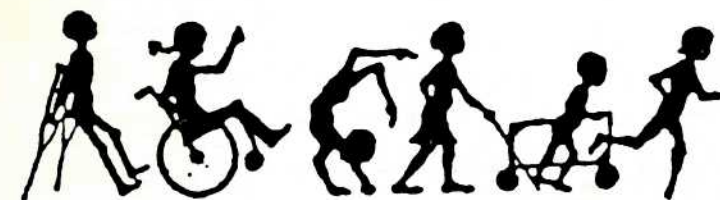


인권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호
	A 41	203

4

## 한국 특수교육의 이념 정립을 위한 심포지움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공대위 사무국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37-062

서울시 서초구 방배 2동 46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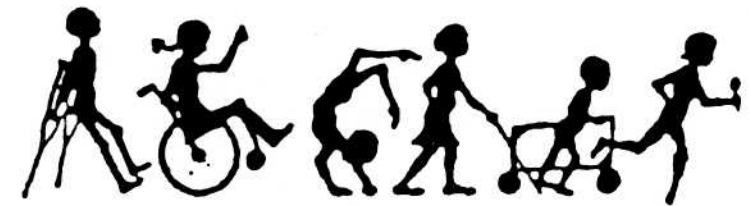
전화 521-5364, 팩스 584-7701

일 시 : 1992년 6월 13일(토) 오후 3시

장 소 : 한국장애자재활협회 대강당

주 최 :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한국 특수교육의 이념 정립을 위한 심포지움



일 시 : 1992년 6월 13일(토) 오후 3시

장 소 : 한국장애자재활협회 대강당

주 최 :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목 차

◆ 발제문	.....	
	특수교육의 원리 <이나미 .....	8
◆ 각 소위원회 보고서		
	개선되어야 할 교과과정과 교사자격 기준 <예비교사 소위원회 ..	13
	장애아의 학습받을 권리에 초점 둔 특수교육법 <교사 소위원회 ..	20
	장애아에게도 '의무교육'을 부모 소위원회 .....	27
◆ 부록		
	한국특수교육협회의 특수교육 진흥법 개정안 .....	28
	공대위 특수교육 진흥법 개정 방향 .....	35
◆ 그 외		
	공대위는 올해 이렇게 일합니다 .....	44
	공대위 조직표 .....	48
	공대위 결성문 .....	49

## □ 심포지움 순서

		사회 : 김성재 교수
개 회	.....	사 회 자
인 사 말	.....	김 성 재
소위원회 활동 보고	.....	김 주 영
심포지움		
	주제발표 : 이나미 (한국교육개발원 특수교육연구실장)	
	“특수교육의 원리”	
	토 론 자 : 김승국 (단국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강위영 (대구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곽준기 (삼육재활학교 교장)	
	박승희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과 강사)	
질의응답		
폐 회	.....	사 회 자

## 특수교육의 원리

이나미

특수교육의 역사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1930년도 이전에는 장애인의 능력개발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다가 점차 시각·청각 장애인에 대하여 인도주의적 관심과 함께 교육적 관심을 나타내게 되었다. 또한 1950년도를 전후하여 의무교육제도가 확립되면서 전 학령기 아동에 대한 공교육 개념이 도입되고 시민의 권리주장과 함께 장애인의 교육권도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철학적 이념과 가치관은 사회적인 논쟁점에 방향을 부여하여 왔으나 새로운 논쟁을 불러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전 학령기 아동에게 평등한 교육권이 주어지면서 중증 장애 아동을 포함한 장애아동에게도 교육의 접근이 가능한가. 그 접근을 통하여 얻는 기대효과는 있는가. 이러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게 되었으며 교육적 배치의 문제도 야기시켰다. 공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면서 장애인의 교육적 목표가 일반아동의 교육목표와 다름이 없다면 정상화시켜야 하는 범주는 어디에 근거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교육적 배치 문제도 야기시켰다.

지도의 방법과 접근체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평등성에 입각하여 투자의 효과 측면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시각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특수아동을 위한 궁극적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교육과의 관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제반 법률적 기초를 설정하는 틀을 만들 수 있으며, 그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 1. 교육 받을 권리

흔히 특수아동의 교육적 목표는 일반 아동들의 교육목표와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장애아의 경우 장애의 상태가 심할수록 우선 그 장애를 가볍게 하는 치료내지 교육에 우선적인 목적을 둬으로써 전인적 발달, 자아실현, 대인관계개선, 경제능력 배양과 같은 총체적 목표를 잇기 쉽다. 그렇다면 모든 장애아동들에게 교육의 권리를 주어야 하는 평등성의 논리, 교육받고자 하는 자유의지의 논리에 반하여 사회현상과 마찰을 일으키는 요소를 분석할 수 있다. 즉 평등성, 자유권리에도 불구하고 학교 및 학급의 한계가 있는 경우에 장애의 상태가 심한 아동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많은 제약이 따른다.

또한 요즈음 교육의 투자효과나 교육의 수월성의 측면에서 장애정도가 심할수록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게 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정상아동의 경우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이며 지방, 농촌의 중등부까지 의무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현실에서 많은 장애아동들은 교육에의 접근을 자신의 권리로서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수혜율 13.8%). 교육의 권리는 얼마만큼 주장되어야 하고 누가 주장 하여야 효과의 극대화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정상아동과 마찬가지로 성인으로 성장하였을 때 책임있는 시민으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인이 될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준비받을수 있어야 하는 권리가 장애인이라고 하여 제외될 수는 없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시민의 권리는 시민의 의무이기도 하므로 장애인의 권리와 의무 역시 일반인의 의무·권리와 조금도 다를 수 없는 것이다.

### 2. 교육적 배치 원리

교육의 최종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장애아동을 교육하였을 때 많은 연구결과는 통합적 교육방식을 선호한다. 그 이유는 통합적 교육방식이 지금까지 훌륭한 교육적 결과를 낳았다는 수치적 성과를 통해서가 아니다. 격리된 상태에서의 교육적 결과가 결코 우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국의 많은 기술제 학교나 시설에서 일어나는 비인도적 행위와 교육적 결과의 부정적인 결과는 보다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방식에로의 도입을 성찰하게 하였으며 그 결과 통합교육에 의한 정상화를 강조하게끔 하였다. 그러나 단순한 통합만을 시도함으로써 부작용과 비효율성도 초래했다.

예를 들면 단순히 특수학교 학생을 일반학교 특수학급으로 보내고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일반교실로 보낸다고 하여 정상화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일반교사와 일반아동의 이해와 협력, 행정가의 이해와 협조가 없이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현실적으로 보아 특수학급이 한 학급인 학교에서 자폐증 아동, 학습장애 아동, 정신지체 아동 및 기타 지체장애, 시각장애 아동들이 10명 입급되어 있을 때 교사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학생들의 교육적 권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 교육적 배치는 아동의 정상화 원칙과 통합교육을 통한 사회통합 효과가 가능한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장애아를 신체적 조건에 의하여 격리하는 것은 인도주의적 측면에서도, 또다른 면에 있어서도 학생의 교육적 권리를 무시한 처사이며 혹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는 곳에 배치하지 못하는 것도 교육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또 한편으로 한 아동을 위하여 각반 학급학생들이 어느만큼 이해하고 시간적 양보와 학습적 지체를 감수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요즈음 강조되고 있는 우수, 영재아의 교육 우월성에 비추어볼 때 어느 곳에 교육적 배치를 하여야 모든 학생들의 교육권리가 침해되지 않는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일반학급에 필요한 모든 시설과 전문인이 배치되어 한 학생을 위해서라도 교육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시설, 전문인이 배치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비를 요구하고 전문인 배치를 요구할 수 있을지는 토의를 통해 법적인 발전방안의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3. 교육방식의 원리

특수 아동의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여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전문인이 참여하여야 하며 개별적교수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일반아동과의 형평성의 원리가 마찰을 빚게 되고 재정적인 기반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교육방법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특수교육은 종합적인 노력이며 많은 보조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일반교육적 방식과 시설상의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한 특수학급당 인원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정신지체 장애인 교실의 경우에 있어서 장애의 특성이 모두 다르고 학습적, 정의적 발달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한반의 정신지체장애인 수는 기껏해야 4~5명으로도 한 교사의 힘으로는 벅차다. 혹은 일반학교 안에서 특수학급에 소속될 경우 한명의 정신지체장애 학생만으로도 타 아동과 함께 지도하기 어렵다. 이렇게 학생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교수방식이 이중지도 혹은 일제수업과 함께 지도되어야 한다.

최대한의 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성인시기에 능력있는 성인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준다는 의미에서 볼 때 위의 정신지체 장애학생에게는 많은 교육적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개별지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할 것이다. 모든 학생들의 필요한 교육적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최후의 이상을 실현하는 방안이며 그럼으로써 각 아동의 전인적인 인격을 연마하고 능력있는 성인이 된다면 모든 교육요구가 만족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대체로 일반아동의 경우와 장애 아동의 교육경비를 비교할 때 1:5 혹은 1:10의 차이가 난다. 이에 반하여 교육의 투자효과 측면에서는 그 반대의 효과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주장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방식과 가능한 서비스 없이는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주장일 것이다.

### 4. 일반교육과의 관계

특수교육의 최종적 목적은 각 아동이 일반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 때때로 특수교육은 그 목적을 망각한채 장애아동들을 일반교육의 장에서 분리하여 별개의 교육을 시키고 별개의 삶을 살도록 몰아가는 측면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특수교육 전문가는 특수교육 이전에 교육전문가이어야 할 것이며 특수교육기관은 특수교육기관이기 전에 교육 기관의 카테고리를 더 선명히 그을 수 있는 지혜를 보여야만이 장애아동이 장애아동이기 전에 한 아동으로서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상화의 원리는 교육환경을 가능한한 정상적인 환경에 통합하여 정상적인 환경에서 정상적인 삶을 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데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볼 때 장애인의 직업문제도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종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특수교사의 자격도 일반교사의 자격을 획득하고 일반아동을 교육할 수 있는 능력이 함께 배양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특수교육의 재정적, 행정적 체계가 일반교육과 점점 멀어지는 것은 특수아동을 일반아동들로부터 점점 더 격리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하리라고 본다.

이와같은 교육원리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부에서 제시한 '특수교육발전 장기계획'(장애인신문 1992년 5월 20일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해 볼 수 있다.

1) 내년부터 2001년까지 33개의 특수학교를 신설하고 분교장 확대 및 특수학급을 33개 확대한다고 한다. 특수학교의 설립에는 많은 경비가 들고 외국의 경우 점점 폐쇄되는 추세에 있다. 심한장애인이 있는 의 수용기관 안에 특수교육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새로운 특수학교 건립은 시설 및 자원의 낭비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통합교육, 정상화 원칙에 입각해 볼 때 분교장 확대나 특수학급의 증설은 바람직하고 아동의 특수성에 따른 학급증설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2) 직종을 장애유형별로 습득이 가능한 3~4개 직종을 골라 훈련시키며 고등부를 연장하여 직업교육심화과정을 두고자 한다. 심화과정을 1~2년 연장하는 것은 고등부시기에 완전한 직업숙달이 되지 않는 학생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직종의 제한은 많은 문제가 있다. 1991년도 교육개발원에서 마련한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시각, 청각, 지체, 정신지체 장애학생들의 직종은 매우 다양하여 정신지체인 직종 57가지, 지체 장애인 직종 127가지에 이른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이 원하는 직업을 택하게 하고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근본방향을 삼아야 한다고 할 것이다.

3) 특수교사자격을 일반교사자격과 같이 제도화하는 것은 특수교사의 사기 향상과 일반교사와의 교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4) 특수교사는 일반교사의 자격을 취득하고 난 후에 특수교사의 자격을 취득하도록 특수교육교사 양성제도 방법이 수정되어야 한다.

5) 일반교사의 경우에도 이수할 최소한의 특수교육과목을 규정하여야 한다.

6) 교육부내에 특수교육전담부서를 신설하여야 많은 발전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상의 장기발전 계획안에 대한 분석에 덧붙여 추가되어야 할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은 여러 전문직에 의한 종합적인 노력으로서만이 가능하다. 그러나 위 종합 계획에는 직접 관련된 특수교사의 양성제도에만 언급하였고 기타 중요한 관련인사에 대한 언급이 없다. 관련 전문요원에 대한 언급 및 기준이 그 전문요원 양성기관과 협조하여 언급되고 요원배치를 규정하여야 한다.

2) 특수교육은 여러 서비스기관의 협조체계에서만 가능하며 재정적 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확실한 교육비의 내용을 명시하고 일반교육비와 같은 교육세 신설 혹은 일반교육비의 할당비율을 규정해야 한다.

3) 특수교육은 각 아동의 특성에 맞는 개별교육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개별교육계획을 의무화하고 각 학급당 학생수를 규정해서는 안된다. 많은 수의 특수아동을 보호하는 것에서부터 한 아동이라도 교육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학생수를 규정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평가 방식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분명한 성취효과를 나타내주는 평가 방식을 사용하고 가족에 남기도록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사의 지도방식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4) 특수교육은 특수교육적 시설만을 통하여 아동교육에 임한다는 방식을 탈피하여 시설 및 자료미비가 있는 경우 지역사회 시설 및 자원인사를 유동적으로 사용하고 비용지급

을 해주는 방식으로 직업교육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 5. 맺는 말

특수교육의 목적은 특수한 장비와 방식을 사용하여 모든 특수아동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특수아동은 일반아동과 마찬가지로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학습적, 정서적, 신체적 발달을 꾀하여 성인시기에 책임과 권리를 향유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않으며 근본 원리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따라서 특수교육은 특수한 방식과 시설,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되도록 일반교육 시설 내에서 일반교육의 범주를 스스로 자각하여 소속되도록 노력함으로써 특수아동을 특수한 상황으로 몰아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특수교육이 추구하는 정상화 원리이며 통합교육적 원리이며 인도주의적 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개선되어야 할 교과과정과 교사자격기준

### 들어가는 말

우리 나라에서 세종 27년 1445년부터 맹인 10명을 선발하여 점복교육을 한 것이 최초의 특수교육이었다고 하나 서양의 특수교육이 도입된 것은 신교육이 들어오기 시작한 때이다. 1894년 Rosetta Sherwood Hall이 평양에서 맹교육을 시작하였고 또한 1909년에는 농교육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일제시대를 겪고 나서 법적으로 특수교육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게 된 것은 1949년 특수교육의 목적, 특수학교 설치의무, 특수학급의 설치와 입급대상 등의 조항이 포함된 교육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사의 양성은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비정규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 1950년에 국립맹아학교에 신설된 3년제 사범과와 1954년에 서울맹아학교에 신설된 1년제 보통사범과에서 특수교육 교사를 양성해 왔다. 그러나 이 사범과와 보통사범과는 1964년에 폐지되었다. 특수교육과는 1961년 한국사회사업대학(현 대구대학교)에 처음으로 설치되었지만 현재와 같은 무시험검정으로 특수학교 교사 자격증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74년 이후이다.

그리고 특수교육은 1977년 특수교육진흥법의 제정으로 많은 발전(양적)을 이루었다. 그에 따른 교사양성도 지금은 6개대 8개과에서 특수교육교사(이하 특수교사)가 양성되고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특수교사 양성의 역사를 볼 때 지금까지 특수교육의 발전은 질보다 양적인 팽창이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특수학교가 1962년 10개에서 1991년 101개로, 특수학급이 1971년 1개에서 1991년 3,914개(중학교 666개 포함)로 증가하였으나 특수교육기관 중 조기교육과 고등교육 기관이 아직도 제외되고 있고, 특수교사가 6개대 8개과에서 매년 350여명이 배출되고 있음에도 그 인력자원의 배치·활용의 문제와 교사자질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원인은 특수교육 체제가 특수교육진흥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수교육요구아동(이하 특수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게 짜여져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특수교육과의 교사양성과정 또한 특수교육의 질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지 아닌 자격을 따기 위한 교육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특수교육체제와 그에 따른 교사양성, 그리고 현재의 특수교육과 교육과정의 문제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보겠다.

## 1. 특수교육 체제의 올바른 방향

우리 나라의 교육은 교육목적·교육목표가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한 속에서의 교육체제 운영의 결과로 주입식·입시 위주의 교육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특수교육도 인간교육의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의 체제가 이루어졌기에 사회와 분리되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특수아동과는 거리가 있는 학교·시설 위주의 기형적 형태를 이루어왔다.

특수교육 체제의 올바른 방향 제시를 하기 위한 교육철학적 접근은 교육체제의 기저가 되어야 하지만 본 고에서는 예비교사라는 한계가 있기에 여기서는 교육 기회의 균등을 특수교육 체제를 구성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하겠다.

그러면 교육 기회의 균등을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교육 기회의 균등은 접근기회의 평등과 내용의 평등으로 나누어진다. 또한 접근기회의 평등은 허용적 평등과 보장적 평등으로, 내용의 평등은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나누어진다.

허용적 평등은 법이나 다른 제도상으로 교육기회를 막아서는 안되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관점이다. 보장적 평등은 허용적 평등의 개방만이 아니라 능력있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과정의 평등은 접근기회의 평등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학교간의 격차가 나기 시작하자 학교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 처치를 가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결과의 평등은 교육의 접근, 과정 상의 표면적 평등 단계를 벗어나 교육 결과의 개인간·계층간의 격차를 줄이자는 차원에서의 접근이다. 이를 위해 학교 교육 이전의 교육적 결손을 보상해 주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의 역차별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보상적 평등주의라 한다.

이에 비추어 특수교육 체제의 방향을 제시하면, 먼저 접근 기회의 평등 중 허용적 평등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수아동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보장적 평등은 허용적 평등의 실현이므로 모든 특수아동에게 공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특수아동은 취학전 교육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 의무 무상 교육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특수교육기관의 고른 지역적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각급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지원 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가진 법적 보장이 있어야 한다.

내용의 평등 중에서 과정의 평등은 특수아동의 교육배치에 따른 다양한 교육적 지원- 개별화교육,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이하 관련서비스)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국가는 교육예산 중에서 일정비율을 특수교육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하고, 특수교육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특수교육기관을 보조할 예산도 일정비율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수교육과 재활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과 사립의 재정비리의 근절을 위해 결산과 감사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법적 장

치를 마련해야 한다.

결과의 평등은 특수교육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아동에 비해 많이 이탈되어 있는 특수아동에게 있어 보상교육은 당연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교육환경의 개선, 조기관별·교육, 부모교육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환경의 개선은 특수교육기관만이 아닌 각급 학교 모두를 포함한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각급학교에 입학하여도 환경적 불이익을 받으므로 그가 필요로 하는 제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특수아동에게 적합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육프로그램과 교재·교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국가는 이런 일을 전담할 연구기관을 지원 및 육성해야 한다. 특수아동의 조기교육과 부모교육은 가장 강조되어야 할 점이다. 전체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는 6.98%로 그 중 경도 대상자가 5.50%, 중증대상자가 1.48%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상유아는 교육을 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부모의 장애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장애유아의 조기교육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방치되는 실정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조기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과 교사의 부재이다. 특수교육기관 중에 유치원 과정도 포함되나 장애유아는 그 연령을 더 낮추어야 하며 조기교육실에 대한 기준도 없다. 그리고 유아 특수교육교사는 그 자격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문교사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기교육과 부모교육 등 특수교육체제의 확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 기회 균등의 대한 모든 요구를 실천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교육체제는 통합교육 체제라 할 수 있다. 조기관별과 그에 따른 조기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리고 장·단기적 교육대책(평생교육적)이 세워져야 한다. 교육기간(정규교육기간) 후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자아실현으로서의 노동은 현대에와서 직업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업재활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 장애 재활 체제의 확립 곧 직업재활을 위한 체제가 특수교육체제의 바깥에 있어야 한다.

특수아동의 대부분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체제에서는 지금의 전통적인 장애종별 분류보다도 장애정도의 구분이 더 필요할 것이다. 그 구분은 일반교육과정에 통합가능한 경도(輕度)장애와 일반교육과정에 통합이 어려운 중도(中度)장애로 나누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경도장애의 교육체제와 중도장애의 교육체제가 다르게 구성될 것이며 그에 따른 관련서비스의 지원체제 역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공통원칙이 있다면 체제의 중심은 아동에게 있다는 것이다.

## 2. 교사자격제도의 방향

앞에서의 특수교육의 방향이 통합교육이라 할 때 그에 따른 교사의 종별범위는 상당히 다양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관련서비스의 제 부문에 있어서의 자격도 구체화되고 그 법적 지위 또한 보장되어야 한다.

특수교사는 특수학교교사에서 특수교육교사로 그 명칭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서도 나왔듯이 특수아동은 대부분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수교육교사의 자

격중에 장애종별 구분은 필요 없다. 그보다는 통합교육에 따른 경도장애와 중도장애의 장애정도 구분이 필요하다. 특수교육교사의 자격은 경도와 중도장애로 각각 정교사 1·2급 및 준교사로 나누어야 하며 그 기준은 경도와 중도장애에 따라 달리 만들어야 하겠으며 일반교사와 달리 더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학력은 대학 및 대학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교사의 임용에서 사립특수교육기관의 교사채용은 공개채용으로 제도화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사립특수교육기관이 비민주적 운영과 채용에 있어서의 비리(기부금제 등)가 만연하고 있고, 비자격교사의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장교사의 재교육은 새로운 교육평가·교수방법 등 현장에 활력과 전문성을 불어넣기 위해 필요하다. 일반교사는 연수과정에 특수교육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특수교사를 위해서 교원연수기관에 특수교육교원연수기관을 포함시켜 전문적인 연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수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관련서비스의 구체화·체계화·효율화가 이루어져야 되며 이의 공개념화가 필요하다. 관련서비스란 특수아동이 특수교육프로그램으로부터 가장 적합한 도움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일련의 지원적 프로그램들과 활동을 말한다. 즉 특수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개 아동의 장애를 특별히 교정하거나 보상해주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재활의 한 부분으로 여기에는 감각·운동기능훈련, 물리적 훈련, 사회·심리적 훈련, 언어훈련, 작업훈련, 직업보도에 필요한 서비스 외에 수술, 장애진단과 평가, 의료 및 보건, 부모상담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특수교육과 동시 또는 먼저 이루어져야 할 치료부분에서 특수교육요원은 더 세분화된 자격기준의 확립으로 교사로서의 법적 지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세분화는 각 장애종별 및 정도별로 요구되는 것을 수렴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직업재활전문인의 양성 및 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은 법적으로 직업보도 시설의 설치만 거론되었지 그에 따른 전문인의 배치에 대해서는 제기되지 않았다. 따라서 특수학교에 직업교사 정원을 두고, 직업교사의 자격을 특수교사 자격중 소지자로 소정의 직업교육 강습을 받은 자나 실기교사 자격중 소지자로 소정의 특수교육 강습을 받은 자로 하여 배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직종의 개발과 직업의 배치에 따른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직업재활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 3. 현재 특수교육과 교육과정의 문제

현재 특수교육과의 교육과정의 문제는 위에 제시된 특수교육체제와 그에 따른 교사자격제도의 방향에 비추어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나라 대학의 교사양성특성이 교육대상 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닌 자격기준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반 초등이나 중등의 교육체제와 교사자격제도가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다면(자격검정을 기준했지만) 특수교육의 교육체제와

교사자격제도는 애매한 상황이다. 자격은 특수학교교사 정교사 1급만이 있을 뿐이고 자격검정에서도 각 장애영역의 이수만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지금의 특수교육과가 있는 6개대 8개과 모두의 교육과정이 다르다. 그러나 그 특성의 비교에서 대두되는 문제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초·중등교육의 전문성 확보의 미흡, 조기교육과정의 미비, 교육실습의 부족, 직업교육의 부재 등이다.

#### 1) 초·중등 교육의 전문성 확보의 미흡

6개대 8개과의 초·중등 교육과정은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초등만 이수하는 경우와 중등만 이수하는 경우, 초등·중등 모두 이수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먼저, 초등만 이수하는 경우 초등 각 교과를 이수하여야 하는데 우리 나라 초등과 교사는 교육대학에서 폐쇄적으로 양성되므로(교육법 제 118조, 128 조) 사범대나 사범계열의 현 특수교육과는 중등교사를 양성하는 체제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대개의 강좌를 강사에 의존해야 하는데 초등특수교육의 각과를 전공으로 하는 강사진의 확보는 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책임성 있는 교과의 내용을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초등교직의 정비된 기준이 없으며 초등특수교사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편제가 초등부의 장애아동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초등교사의 양성에 필요한 과정을 설치, 이수케 함으로써 교사자격의 취득에 중심한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정인지체를 위한 초등과의 설치가 없다.

중등만 이수하는 경우 현재 우리 나라의 중등특수교사자격기준은 정인지체에서마저 부전공이상의 교과전공학점을 요구하므로 쉽게 통합될 수 있는 경도 지체나 청각·시각과의 구별이 전혀 없고, 그러므로 중등의 경우 대개의 과가 21학점 정도(부전공 요구 학점)를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 전공학점(42학점이상)의 기준에 상당부분 부족한 것으로서 비교적 장애정도가 가벼운 학급에서 중등 각 교과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특수교육현장에서 일반교사를 요구하는 그릇된 주장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또한 현재 특수교육과가 설치되어 있는 각 대학에서 중등의 모든 교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할 수 있을만큼 충분한 교과를 개설하고 있지 못하므로 근본적으로도 특수교사의 역량을 제한하는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다.

초등·중등 모두 이수할 수 있는 경우 초등 혹은 중등의 교과전공(부전공)을 선택하고 그 과정을 밟게 되지만 대개의 경우 이후의 취업에 대비하여 두 가지를 모두 택하고 결국 취업의 여하에 따라 자격을 나누어 갖게 마련이다. 이는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특수교육의 상황을 학부에서 다룰 수 있으므로 개방적인 장점이 있는 데 반해, 특수교육 전공의 심화를 막고 장애별이 아닌 장애 정도별의 교과를 가지지 못하여 오히려 학우들에게 기회주의적인 속성을 불어넣을 위험마저 안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정비된 임용제도의 부재에 있는 것이며 사학의존도가 높은 특수교육계에서 만연되어진 비민주적 사학의 풍토에도 기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밑에서 다룰 조기교육과 같이 문제의 원인은 교원자격제도에서 나온다고 본다. 그러므로 교원자격제도는 중등학교와 국민학교, 유치원 교사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그에 맞추어 대학의 특수교육과도 초등·중등, 유아 특수교육과로 세분화되어야 한다(대



구대에서는 초등과 중등 특수교육과로 나누어 있다). 그리고 전문성을 담보해낼 전문교수진의 확보,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수·교사·예비교사 3자 협의체 구성 등이 필요하다.

## 2) 조기교육 과정의 미비

조기교육의 중요성은 다 인식하고 있다. 유아기는 신체·언어·인지·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특수아동은 자연스런 환경 속에서는 잠재력을 충분히 또는 거의 개발할 수 없다. 또한 방치할 경우 제 2의 장애나 주장에 연관된 다른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적절치 못한 양육방법에 의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특수아동의 조기교육은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특수교육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이미 조기교육에 상당수 관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지금의 교육과정 상에는 조기교육에 대한 대비가 없다. 조기교육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앞서 지적했듯이 교원자격과 특수교육과가 세분화되어야 한다.

## 3) 교육실습의 부족

특수아동은 아동의 특성이 다양하고 특수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특수교사는 전문가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많은 실습이 요구되지만 교육과정에서 실습은 사범대학에 속해 있는 관계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대부분의 특수교육과에는 부속 특수학교가 없으며 또한 실습 기자재가 상당히 부족한 관계로 각 영역별 심화과정으로서 실습 기회가 주어지고 있지 않다. 그리고 현장 적용의 교육과정과 그 심화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대학에서는 특수학교의 교육설비 기준에 준한 기자재를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부속특수학교나 부속학교 내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는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 4) 직업교육의 부재

인간의 자아실현은 직업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한 것이다. 장애인의 재활의 궁극의 목적은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바로 서는 것이라 할 때 직업재활은 재활의 꽃이다. 직업재활에 있어 특수교사의 위치는 재활팀의 일원이다. 특수교사는 특수아동의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업재활에서 아동 특성에 맞는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선정과 상담, 그에 따른 장기적 교육계획 수립에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런 특수교사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과정에는 직업교육에 대한 교육과정이 없다. 따라서 장애 종류와 정도별 직종·진로 등의 직업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맺는 말

우리 나라 특수교육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루어 보았다. 특수아동의 교육기회 균등을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났다. 제도적 보장을 위해 현행의 특수교육진

흥법은 폐지되어야 하고 특수교육의 교육체제를 새로이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 대학의 교사양성은 교육대상을 중심으로한 창조적이고 전문적인 과정이 아니라 법 자격기준의 최소한을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특수교육에 있어 교사양성의 문제는 우리 나라 대학 교사양성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동시에 특수교육 전반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의 교육과정은 통합교육체제를 담보해내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장애정도의 구분에 의한 특수교육체제가 이루어졌을 때 현행의 교육과정은 정도의 특수아동을 가르칠 교사의 양성 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교육의 본연의 목적인 중도 특수아동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특수교사 양성과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그리고 조기교육 특수교사의 양성과정도 이루어져야 하겠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일반적인 원칙을 담아내지 못하는 현 특수교육과 교육과정은 단지 자격만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이 되고 있다. 그것의 원인은 자격기준의 문제이며, 자격기준의 문제는 특수교육체제의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수교육의 체제가 바로 잡혀야 하겠고 그에 따른 각종 전문인력의 활용·배치와 지위보장을 할 수 있는 자격제도의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고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수·교사, 예비교사 3자 협의회 구성이 필요하다.



## 장애아의 학습받을 권리에 초점 둔 특수교육법

### I. 들어가는 말

특수교육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접하는 문제는 얼마든지 열거할 수 있다. 현재의 특수교육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들은 대학의 전문교수, 정부의 담당 행정관, 교육연구원, 현장 교사들에 의해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온 것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의 문제들이 이제까지 논의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와 정부, 교육계의 이 분야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그에 따른 법제도의 미비, 전담 부서의 부재 등에서 찾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현장의 교사가 느끼는 특수교육의 문제들을 교육환경과 교육내용, 교사의 권익 등과 관련지어 제시하고, 그 원인과 해결방안을 법제화의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 II. 교사가 느끼는 특수교육의 문제점

#### 1. 교육환경

##### 1)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취학기회 부족

현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수는 약 71만여명으로, 그 가운데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의 취학 대상은 약 14만 6천여명이며, 나머지 56만 4천여명은 일반학급에서 특수교육 서비스를 받아야 할 대상인 것(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1989)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현재(특수학교:1989년 기준, 특수학급:1988년 기준) 51,695명으로 35.36%에 그쳐 아직 65%(9만 4천여명)에 이르는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취학 대상 학생들이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특수교육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1991년 현재 전국의 특수학교는 모두 101개교이며, 특수학급은 3,248학급으로 나타나(전국특수교육요람 1991), 현재 미취학 학생의 대부분을 취학시키기 위해서는 약 63개교의 특수학교와 2,000학급의 특수학급을 더 증설해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1989).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취학기회를 가로막는 또 하나의 원인은 교육법 시행령 제 102조(취학 의무의 유예 등)의 규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③ 취학의무의 면제는 불구·폐질자에 한하며...”라는 문구는 사실상 취학대상 장애인(불구...)

의 취학의무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취학의무의 면제는 중증의 장애인으로, 공인된 판별위원회에서 교육이 전연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자에 한하도록 법적인 제한을 두어야 하며, 현행 특수교육 진흥법 제5조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에 관한 규정도 무상의무교육으로(김영환, 1990) 바꾸어야 한다.

#### 2) 조기교육에 대한 무관심

과업의 적기성, 경험의 누적성, 발달단계의 불가피성 등 발달심리학의 연구 성과에 따라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이미 이론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은 유아교육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학령전 교육이라고도 불리는 조기교육은 장애아동의 사회성, 정신능력, 그리고 신체적 발달을 촉진하며, 환경개선을 하면 할수록 더 빠른 발달을 가져온다는 특수교육 전문가들의 주장이 많다(송준만, 1988). 따라서 장애아동에게 조기교육은 학령기 교육 이상으로 중요함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애아동의 교육은 장애가 발견된 순간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의 장애아동 교육법인 PL 94-142에서도 장애아동은 출생과 함께, 또는 장애가 발견되는 즉시 교육을 시작하도록 못박고 있어,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용어의 정의) 제 3항에서는 특수교육을 유치원 교육부터만 규정하고 있어 조기교육의 법적인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녀가 장애아로 판명된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사설 조기 특수교육기관에 보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조기교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커 일부 부모들은 아예 조기교육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장애아동의 조기교육은 장애가 발견된 순간부터 실시되어야 마땅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애아동의 조기교육도 학령기 교육과 같이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교육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무상으로 보장하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3) 특수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우대 가산점 제도의 병폐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제34조(가산점) 제1항 제4호로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육 담당교사에 대한 우대 가산점 제도(5년까지에 한하여 연 0.5점의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나 교육적 열의보다는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얻기 위해 특수교육을 담당하려는 일부의 정규학교 교사들로 특수교육 전공 교사들의 교육계 진출이 가로막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의 질적인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특수교육 전공 교사들에게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우대 가산점제도는 마땅히 철폐하여야 한다.

#### 4) 비현실적인 학급당 학생수

현재 교육법 시행령 제176조(학급)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학급당 학생수는 15명에 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수업장면에서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적절한 개별

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며, 전체적인 통제가 불가능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정신지체와 정서장애 특수학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은 지도하기에 알맞은 학급당 학생수를 10명 이하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정신지체나 정서장애,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사들은 장애의 특성상 5명에서 7명 사이가 더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김승국, 1987). 또한 정신지체의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학급당 학생수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현행 학급당 학생수는 장애영역과 장애의 정도에 따라 10명 이내에서 융통성 있게 정해야 할 것이다.

### 5) 일반 교사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물이해

현재 대부분의 일반 교사들은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담당 학급에 통합되어 있는 장애학생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학교 내에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급의 담당 교사나 학생들에게도 왜곡된 인식과 편견을 가져, 이유없이 차별하거나 무시 또는 제외시키는 태도를 갖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태도는 평교사는 물론 교장, 교감도 예외는 아니어서 특수학급 경영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무관심 등으로, 장애 학생들의 통합교육을 철학으로 하는 특수학급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상을 없애고 통합교육대상 장애학생들이 장애에 따른 양질의 보상교육(특수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 교사 모두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교직과정을 개정하여 <특수교육 개론>을 교직 필수과목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하며, 현직교사 연수과정에 <특수교육 개론>을 포함시켜 모든 현직교사들이 장애를 가진 학생과 특수교육을 이해하도록 제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1989).

### 6) 사립 특수학교의 경제적 어려움

공립 정진학교(정신지체, 1987년 인가)와 국립 선진학교(정신지체, 1990년 인가)의 시설과 규모는 국내 최고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특수학교 가운데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립 특수학교들은 시설과 규모면에서 국·공립과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시설의 증축이나 개선은 물론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사립 특수학교 설립자들이 재정적 능력이 별로 없고 국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기부금이나 봉사정신의 일념으로 학교를 꾸려왔기 때문(배연창, 1988.)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사립 특수학교의 책임자들은 대부분 경제성을 기대하기 힘든 기존의 장애인 복지시설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더욱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사립 특수학교의 이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재정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학부모들에게 기부금을 요구하는 부작용을 낳아 특수교육 진흥법 제5조(무상교육)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무상교육을 유명무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교사의 임용 시에도 공공연히 기부금을 요구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사립 특

수학교의 이같은 태도는 결국 학부모들에게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 주어 특수교육에 대한 모처럼의 열의를 식혀버릴 수 있으며, 교사에게는 씻을 수 없는 양심의 가책을 갖게 하여 투철한 사명과 긍지를 지닌 올바른 교사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시설 개선과 운영에 필요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사립 특수학교들도 국·공립 특수학교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며, 학부모와 교사들에 대한 기부금 요구를 근절토록 감독하고 학교 운영에 따른 정부 지원 내역과 순수한 기부금 및 후원금의 내역은 물론, 예산과 결산에 대한 내역도 공개하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7) 특수교육 전담부서의 부재

1979년 특수교육 진흥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특수교육 행정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다. 현재 교육부에는 보통교육국의 의무교육과에 한 명의 연구사가 있을 뿐, 특수교육만을 담당하는 행정 조직은 물론 전문직의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특수교육과 관련된 행정업무는 교육부의 여러 과에 분산되어 있어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 지기 힘들다(정봉도, 1988).

이 때문에 특수교육의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없으며, 그에 따른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질적인 발전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하루 속히 특수교육을 전담할 전문부서의 설치가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2. 교육내용

### 1) 판별위원회의 역할 미비

특수교육 진흥법 시행령 제2조(특수교육 대상자의 판별) 제1항과 2항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판별 기준과 판별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서 판별위원회의 판별을 받아 입급되는 학생을 보기는 힘들다.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 가운데서도 판별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는 일관성이 결여된 나름의 판별도구나 기준을 정하여 입급 대상 학생들을 선발하는 실정이다.

그 결과 특수학급에 입급되어야 할 학생이 특수학교에 입급되거나, 또는 그 반대이거나, 또는 자신의 장애와는 맞지 않는 특수학교에 입급되기도 하는 등 판별에 전혀 일관성을 찾기가 힘들다. 이러한 경향은 특수학급에서 더욱 심한 편으로 담당 교사들의 가장 큰 애로 가운데 하나이다. 이는 현행의 판별위원회가 시·도 단위의 광범위한 대상지역을 담당하고 있어 실제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의 개별적인 판별을 통한 입급을 지양하고 판별위원회의 기능과 활동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시·도 단위의 판별위원회를 그대로 두되 하부구조로 교육(구)청별 판별위원회를 구성하여(1986, 특수교육 진흥방안 연구) 판별도구와 판별기준에 일관성을 갖추어 실제적인 판별과 입급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의료계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하여 병원은 장애아동의 출생이나 발견 즉시 해당

판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판별위원회 자체 내에서도 아동의 의료적인 진단과 판별을 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판별위원을 두어 장애아동에게 조속한 교육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특수학급 학생 평가의 비합리성

현재 대다수 특수학급 학생들은 그들이 받은 학습내용과 수준에는 관계없이 같은 학교의 일반학급 학생들과 똑같은 조건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만을 따로 모아 평가할 경우 성적관리와 학력인정이 어렵고,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서 형평성이 문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학생들이 배워 온 내용과는 무관한 사항을 평가하는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기만 하고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지도해온 특수학급 담당 교사에 대한 교육적인 무시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학교는 특수학급 교사가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해야 하며 그 평가 역시도 그들이 받은 교육내용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 3) 형식적인 직업교육과 진로지도의 부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그들의 정신적, 신체적 특성상 졸업 후에도 일반 사회에 동화하는데 어려움이 크며 경제적 자립을 통한 사회화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일선 특수학교들은 일찌기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학교마다 특성을 살려 목공이나 도예, 지점도, 수예 등과 같은 기술을 가르쳐 왔다.

그러나 이같은 직업교육이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르치는 기술의 종류도 다양하지 못하며, 그나마 이미 경제성이 없는 것이 많고, 지도교사 역시 대부분 그 방면의 유자격자가 아니어서 심도있는 기술을 전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 웬만큼 기술을 익혀서 졸업 후 취업을 하게 되더라도 얼마지 않아 그만 두게 되는 사례가 많다.

이것은 특수학교가 학교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긴 하였지만, 학생들의 사회진출과 관련하여 직업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결과이다.

한편, 현재의 상황으로는 학생들이 자신의 장애를 일반인들 속에서 이해하고 사회생활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보다 차원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물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는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처지와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선택하게 하는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이 선행

따라서, 하루 속히 장애영역을 고려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는 직업지도와는 별도의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직업교육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있는 기술을 선택하여 그 방면의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실기 교사가 지도하도록 제도화 해야 할 것이다.

## 4) 학생 문제 종합 협의회의 구성

교사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개개인의 문제를 올바르게 파악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 학생에 대한 일관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는 교사 개인의 성실한 관찰과 지도도 중요하겠지만, 그 학생의 관련교사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학생에 대한 서로간의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사들은 나름대로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교수방법이 효과적인지의 여부를 알 수도 있게 되며 그 학생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에 대해 공동 대처할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IEP 구성에 관한 협의, 학습정도에 따른 학급 재편성, 진로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도 토의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학교 내에 연구주임과 학급 담임, 담당교과 담임 등으로 이루어지는 학생 문제 종합 협의회(가칭)를 두어야 할 것이다.

## 5) 사회 생활관 설립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은 대인관계의 미숙으로 일반 아동에 비해 사회 생활의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아동은 자조적인 신변처리는 물론, 간단한 물건을 사거나 전화를 거는 것과 같은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본 활동에 어려움을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 아동을 직접 데리고 나가 상점에서 물건을 사도록 하거나 공중전화를 걸게 하는 등의 실제 경험을 시키는 데는, 가게 주인에게 그때 그때 양해를 구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 이상의 불편을 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생활관(가칭)'을 설립하여 인위적으로 장애 아동의 사회 생활 경험을 늘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생활관에는 일반 가정의 거실, 부엌, 화장실, 방 등을 갖춘 기숙시설을 포함하여 상점, 공공시설 등을 모의로 설치하고, 담당 교사를 배치하여 지역 사회 내의 특수학교, 특수학급, 조기교육실 등에 입급되어 있는 아동들이 돌아가며 이 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 아동의 사회적 신장을 돕기 위한 교육기관의 하나로 설치되어야 할 사회생활관은 반드시 독립된 시설을 갖추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이미 지역별로 설치되어 있는 장애인 종합 복지관과 같은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 3. 교사의 권익

### 1) 교사자격기준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교육 교사들은 일반 교사들에 비하여 자질향상을 통한 전문성 유지 및 심화, 승진기회 등에 있어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 교육법에 특수교육 교사는 일반 교사와 달리 자격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교육법 제79조, 교원의 종별과 자격 <별표 1>), 이로 인해 특수교육 교사들은 현실적으로 승진의 기회가

전혀 없고, 그에 따른 현직연수도 받을 수 없어 전문인으로서의 자질향상은 물론, 승진에 따른 사회적 지위 확보와 사기진작을 기할 수도 없다.

특히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교육 교사들의 경우는 일반 교사들과 다른 자격여건 때문에 엄연히 같은 학교의 교사이면서도 교무활동, 인사, 지위 등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대우를 받기 일쑤이며, 심할 경우에는 학교측에서 아예 교무실 내에 지정 좌석조차 마련해 주지 않아 교무생활에 심한 불편을 당하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특수교육 교사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수인 일반 교사들의 세계에서 고립당하게 되고, 점차 심리적인 위축감까지 느끼게 되어 교사로서의 지도의욕을 상실함은 물론, 개인적으로도 자아정체감을 잃어가는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특수학급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 특수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교육 교사의 차별을 없애고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특수교육 교사의 자격기준도 일반 교사와 같이 정교사(1급, 2급)와 준교사로 세분해야 할 것이다.

### Ⅲ. 특수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교육환경면에서나 교육의 내용면에서, 그리고 교사의 권익면에서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특수교육계에 종사하는 행정가, 교수, 교사, 대학생, 학부모들에 의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문제들이 뚜렷한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정작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해 제정된 특수교육 진흥법이 그동안 법적인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과 이 법이 특수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행 특수교육 진흥법의 부분적인 개정보다는, 앞에서 제시한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적극 수렴한 보다 구체적이고 충분한 내용의 조항들을 담은 특수교육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법에는 반드시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을 실행하기 위한 전담부서의 설치를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는 한국 특수교육에 있어서 새 지평을 여는 첩경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장애아에게도 ‘의무교육’을...

부모는 특수교육의 문제를 장애인의 교육권 및 교육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통학거리 문제를 비롯하여 평생교육, 중증장애아의 조기교육 문제 등 장애인의 교육문제는 산적해 있다. 이런 여타의 특수교육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통학거리가 멀어 장애어린이는 교육받을 기회를 사실상 놓치고 있다. 집 주위에 있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학교의 빈 강의실을 이용하는 방안과 각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될수록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를 통합하여 교육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장애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향후 통합사회를 이룩하는데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이 무상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나 의무교육 조항이 없는 무상교육인데다 교통비, 급식비, 자모회비, 후원회비 등 교육비 외로 상당액을 내는 실정이다. 또한 취학연령제를 폐지하고 6년, 3년식의 학제를 개편하여 교육기간을 늘림으로써 장애어린이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어린이에게 정서장애, 학습장애, 언어장애 등의 어린이에게 조기교육을 실시하면 그에 따라 장애어린이의 교육의 질도 크게 개선되리라고 본다. 그러나 조기교육교사들도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 장애어린이의 조기교육 현실은 참담한 실정이다. 조기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법안을 비롯하여 교사임용기준, 교재 등 조기교육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꼭 마련돼야 한다. 또한 일반 유치원에 장애어린이를 위한 조기교육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 한국특수교육협회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현행 특수교육 진흥법 개정안	개 정 안	개 정 사유
<p><b>제1조 (목적)</b> 이 법은 시청각장애자 등 심신장애자에 대한 특수교육을 진흥하여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생활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1조 (목적)</b> 이 법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의 교육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특수교육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생활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헌법정신 삽입</li> <li>·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명확히 규정</li> </ul>
<p><b>제2조 (용어의 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기관에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점자·구화 및 보조기구 등을 사용하여 교육과정(이하 "교육"이라 한다) 및 직업보도를 하는 것을 말한다.</li> <li>2.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li> <li>3.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병설된 학급을 말한다.</li> </ol>	<p><b>제2조 (용어의 정의)</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라 함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언어장애, 정서장애, 학습장애 또는 기타의 심신장애 및 장애유무를 막론하고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등 정신적,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li> <li>2.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기관에서 제3조에 규정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그들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교과교육, 요육 및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li> <li>3.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유아원,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부 및 전문대학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장애인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li> <li>· 특수교육 용어의 재정의</li> <li>· 조기교육 강조</li> <li>· 취학기회의 확대부여 및 일반교육 체제와 균형유지</li> <li>· 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의 활</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특수학급"이라 함은 특수교육을 위하여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병설된 학급으로서 전일제 특수학급, 시간제 특수학급, 특별지도실, 일반학급 내에서 특수교육 등을 실시하는 학급을 말한다.</li> <li>5. "특수교원"이라 함은 특수학교 교원의 자격을 소지하고 특수학교에서 직접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과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li> <li>6. "순회교육"이라 함은 제3조에 규정된 특수교육 대상자 중 이동이나 운동기능에 심한 장애를 입어 특수교육기관 및 일반교육기관의 통합교육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교육 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교육을 말한다.</li> </ol>	<p>성을 위한 전문대학 과정의 교육기관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원에 대한 명확한 용어의 정의</li> <li>·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배려</li> </ul>
<p><b>제3조 (특수교육대상자)</b> ① 특수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각장애자</li> <li>2. 청각장애자</li> <li>3. 정신박약자</li> <li>4. 지체부자유자</li> <li>5. 정서장애자</li> <li>6. 언어장애자</li> <li>7. 기타의 심신장애자</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판별기준은 문교부령으로 정한다.</p>	<p><b>제3조 (특수교육대상자)</b> ① 좌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각장애인</li> <li>2. 청각장애인</li> <li>3. 정신지체인</li> <li>4. 지체장애인</li> <li>5. 정서장애인</li> <li>6. 언어장애인</li> <li>7. 학습장애인</li> <li>8. 기타의 심신장애인</li> </ol> <p>② 특수교육 대상자의 연령은 0세에서부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③ 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의 특수교육 동향에 따른 용어의 정선</li> <li>· 능력, 특성에 적합한 교육적 조치를 위해 학습장애인을 특수교육 대상으로 추가</li> <li>· 평생교육 차원에서 연령제한 철폐</li> </ul>

<p><b>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수교육 종합계획의 수립</li> <li>2. 생활기능 회복을 위한 교육</li> <li>3.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지도</li> <li>4. 특수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연구·개선</li> <li>5. 특수교육 담당교원(이하 "특수교원"이라 한다)의 양성과 연수교육 및 그 우대책</li> <li>6. 특수교육기관의 설치·경영 및 시설·설비(요육시설·직업보도시설·기숙사 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경비</li> <li>7. 특수교육의 교재 교구 및 보장구의 연구·개발</li> <li>8. 직업보도책의 강구</li> <li>9. 점자도서관 등의 설치·경영과 조성</li> <li>10. 장학금 기타 특수교육의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li> </ol>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시책을 강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에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p>	<p><b>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각각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가진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수교육 종합계획의 수립</li> <li>2.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양성과 연수교육</li> <li>3.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시설설비(요육시설, 직업교육시설, 기숙사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정비.</li> <li>4.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조사 및 파악</li> <li>5. 특수교육자문위원회 설치</li> <li>6.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완비</li> <li>7.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및 추수지도</li> <li>8. 특수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연구·개선</li> <li>9. 특수교육기관의 경영 및 감독</li> <li>10. 특수교원의 인사교류</li> <li>11. 특수교육의 교재, 교구 및 보장구의 연구·개발</li> <li>12. 재가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교육지도</li> <li>13. 기타 특수교육의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li> </ol>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추진·관장하는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각종 시책을 강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타에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시</li> <li>· 낙후된 특수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임무 강화</li> </ul>
<p><b>제5조 (무상교육)</b>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자 및 사립의 특수교육기관 중 의무교육 과정에 취학하는 자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p>	<p><b>제5조 (의무 및 무상교육)</b>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국립·공립 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는 자의 교육은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과정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고등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에 대한 교육권 보장과 교육 기회 확대 제공</li> </ul>

	<p>및 전문부과정 이상은 무상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장애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가진다.</li> <li>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에 대한 의무 및 무상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li> <li>④ 국가는 의무 및 무상교육을 실시함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li> </ol>	
<p><b>제6조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한 보조)</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시설비·실험실비·직업보도비 및 교원의 봉급과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b>제6조 (사립의 특수학교에 대한 보조)</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한 제 운영비를 국공립 특수학교와 동일하게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학육성 및 지원을 통한 취학기관 확충</li> <li>· 국·공립 및 사립간의 불균형 해소</li> <li>· 통학버스운영비, 기숙사운영비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사립특수교육기관 운영의 곤란</li> <li>·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역간 보조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의무규정</li> </ul>
<p><b>제7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b> ① 특수교육에 관한 교육과정은 그 과정별 장애의 중별과 정도에 따라 문교부 장관이 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한 교과용 도서는 무상으로 한다.</li> <li>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의 편찬·검정·인정·생산·공급 및 가격사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li> </ol>	<p><b>제7조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b> ① 좌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좌동</li> <li>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과용 도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 교과용 도서와 구분하여 특수교육연구소 또는 관계 출판부를 지정하여 생산, 공급하고 편찬, 검정, 인정 및 가격 사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의 특성 반영</li> </ul>

<p><b>제8조 (장학금의 지급)</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p>	<p><b>제8조 (장학금 및 연구비의 지급)</b>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원 양성기관에 재학하는 자와 특수교육기관에 재직하는 교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 및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교원 확보 및 연구활동 신장</li> </ul>
<p><b>제9조 (학비감면 등)</b> 각 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당해 학교의 재학하고 있을 경우에는 입학금·수업료 기타 납입금의 감면과 장학제도 및 개별지도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b>제9조 (학비감면 등)</b> 좌동</p>	
<p><b>제10조 (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b>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이유로 입학지원 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 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학 지원에 있어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의 입학고사에 있어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b>제10조 (개별화교육, 통합교육 및 부모교육)</b>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개별화 교육과 통합교육 및 부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학교 이하의 과정에서는 복수담임제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p> <p><b>제11조 (불이익처분의 금지 등)</b> ①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및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 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좌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신장애 학생의 적성 및 능력·특성에 적용한 교육활동 전개</li> <li>· 일반교육과의 통합 및 교류교육 확대</li> <li>· 학교교육에의 부모참여내지 부모교육 강조</li> <li>· 단서조항 삭제</li> </ul>
<p><b>제11조 (건강진단 등)</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의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 정도의 판단(이하 "판정"이라 한다)</p>	<p><b>제12조 (건강진단)</b> 좌동</p>	

<p>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및 판정의 결과 교정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p>	<p>2 좌동</p>	
<p><b>제12조 (직업보도)</b> 특수교육기관의 설치·경영자는 특수교육 대상자가 그 능력에 따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학교에 직업훈련 및 직업보도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b>제13조 (직업교육)</b> ①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경영자는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능력에 따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정 이상의 전문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학교에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경비를 타에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조 보완 및 수학기회 확대제공</li> <li>· 특수교육에서의 직업교육 강조</li> </ul>
<p><b>제13조 (특수교육 요원의 자격과 정원)</b> 특수교육기관에는 특수교원 이외에 요육을 보조하는 특수교육 요원을 두되, 그 자격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4조 (요육담당교원의 자격과 정원)</b> 특수교육기관에는 특수교원 이외에 언어치료사, 청능훈련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요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되 그 자격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요육담당 교원의 자격과 정원 명시</li> </ul>
<p><b>제14조 (특수교육 등의 자질향상)</b>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원과 특수교육 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질교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5조 (특수교원 등의 자질향상과 우대)</b> ① 좌동 ② 좌동 ③ 국가는 특수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의 사기양상을 위하여 본봉의 일정비율을 매월 특수교육수당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그 비율에 관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원 사기양양 및 유인체제 강구</li> </ul>



<p><b>제15조 (점자도서관)</b> ① 점자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활동을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점자도서관의 제작</li> <li>2. 점자도서관의 열람 및 대출</li> <li>3. 점자교육의 지도</li> <li>4. 기타 시각장애자에 대한 지원</li> </ol> <p>② 점자도서관을 설치·경영하고자하는 자는 문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문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점자도서관의 설치·경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p>	<p><b>제16조 (점자도서관) 삭제</b></p>	<p>· 도서관법과 중복</p>
<p><b>제16조 (시행령)</b>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부 칙 (1977. 12. 31. 법률 제3053호)</b> 이 법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부 칙 (1987. 10. 24. 법률 제3936호)</b> 이 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 (1990. 12. 27. 법률 제4268호)</b> <b>제1조 (시행일)</b>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p> <p><b>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b></p>	<p><b>제17조 (기숙사 직원)</b> ① 기숙사를 설치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원 이외에 기숙사에 수용된 학생의 생활 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보육사를 두어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사의 자격 및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8조 (시행령)</b>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부 칙 (1977. 12. 31. 법률 제3053호)</b> 이 법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부 칙 (1987. 10. 24. 법률 제3936호)</b> 이 법은 198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b>부 칙 (1990. 12. 27. 법률 제4268호)</b> <b>제1조 (시행일)</b>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 기숙사 관리의 효율화</p>

## 공대위 특수교육법 제정 방향

### I. 문제의 제기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이 민주 교육 이념으로 강조된 이후로 특수교육은 급진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최근 들어 특수교육은 한 나라 문명의 척도로서, 이 제도가 완비되지 않는 나라는 발전된 교육 제도를 갖추었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00여년의 연륜을 쌓은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1977년 특수교육 진흥법이 제정·공포된 이후로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우리나라 최초의 법령인 이 법에 따라 1979년부터 특수교육 진흥비가 교육 예산에 책정되었으며 1984년에는 특수교육 7개년계획(1985~1991년)을 착수하여 그런대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장애 학생을 위한 공교육의 추진은 출발 단계에 불과하며, 행·재정적 지원과 교육 내용 및 방법의 내실화는 물론, 전문 요원의 양성과 수급, 직업교육의 부실 등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은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수교육은 국가의 절대적인 행정 지원과 막대한 경제지원이 없는 한 특수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특수교육이 발전된 외국의 많은 나라를 보면 특수교육 진흥과 관련되는 강력한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공법 94-142를 들 수 있겠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특수교육 발전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막강하고 새로운 법 제정이 절실히 요청된다.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로 제정·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은 성안부터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온데다 제정 당시와 지금은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이제는 현실에 적합한 법으로 개정 또는 제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특수교육협회에서는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이미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며 교육부에서는 이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개정만으로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며, 더욱이 21세기를 향한 미래의 특수교육법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까닭으로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폐기하고 새로운 「특수교육법(가칭, 이하 가칭은 생략함)」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같은 법 개정이나 제정은 몇사람 또는 몇몇 단체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며 장애 학생, 그 학생의 부모, 특수교육 교원, 장애학생의 교육기관, 장애인 복지 단체, 사회사업가, 장애인 직업훈련원 그리고 관련 종사자 등 각 계 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많은 공청회를 통해 계속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특수교육법 제정을 알리는 출발의 시점에서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 자료에 의해 특수교육법 제정의 기본 방향과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봄과 아울러 특수교육법 제정과 관련되는 관계 법규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특수교육진흥법」의 문제점

총 16조로 구성된 현행 특수교육 진흥법의 문제점을 각 조항별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조 (목적)

특수교육이라고 해서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에 관한 교육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편협한 발상에서 벗어나 헌법, 교육법의 목적과 동일하면서도 장애 극복에 필요한 교육목적이 포함되도록 폭넓은 목적이 진술되어야 한다.

그리고 '시청각 장애자 등 심신장애자'라는 용어 사용도 문제가 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항에서 '특수교육'을 '점자·구화 및 보장구등을 사용하여 교육·교정 및 직업보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나, 이는 분리교육에 치중한 협의의 정의로서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최근의 특수교육에 역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항의 '특수교육 기관'에서는 유아원과 고등교육 과정이 빠져있다. 그리고 이 법에서 제시한 용어들(특수교육, 특수교육 기관, 특수학급)은 법제정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일반화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므로 구태여 용어 정의를 할 필요가 없다. 꼭 필요하다면 「교육법」에서 언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제3조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법」 제9절 특수학교에 있는 내용과 별 다를바가 없으므로 교육법 제145조를 개정하여 포함시킨다. '정신박약'을 '정신지체'로 바꾸면서 타 법의 용어대로 "-인"으로 통일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범위도 넓혀야 한다.

###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의 임무)

각 호에 나열된 시책이 너무 추상적이며, 장애유아의 조기교육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 2항에는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타에 우선하여서 지급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하고 있어서 정책의 난맥상을 초래할 우려가 크며, 또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란 막연한 규정도 문제가 된다. 그리고 지방자치 제도가 본격화되는 이 시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 제5조 (무상교육)

의무교육을 규정하지 않은 채 무상교육만을 다루고 있으며 무상교육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 제6조 (사립 특수학교에 대한 보조)

제4조 2항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정책 의지가 의심스럽다.

### 제7조 (교육과정 및 교육용 도서)

통합교육의 차원에서 「교육법」에 명기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제8조 (장학금의 지급)

제4조 2항이나 제6조와 마찬가지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 제9조 (학비 감면 등)

일반학교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학비 감면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그 학생의 능력에 알맞는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통합교육에 필요한 제반 교육 활동을 지원해 줘야 할 것이다.

### 제10조 (불이익 처분의 금지 등)

'입학지원에 있어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제11조 (건강 진단 등)

1항에서 '학생의 건강진단 및 생활기능 회복 정도의 판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없고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항목이 되어 버렸다. 2항에서도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 제12조 (직업보도)

'당해 학교에 직업훈련 및 직업보도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위의 제11조와 비슷한 실정이다. 직업교육에 소요되는 경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직업교육 전문 교사도 배정되지 않는 현 실정으로 볼 때 직업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 제13조 (특수교육 요원의 자격과 정원)

'특수교원 이외에 요육을 보조하는 특수교육 요원을 두되'라는 내용을 볼 때, 요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특수학교 교원과는 별도로 보조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특수교육 현

장애에서는 치료교육이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언어·물리·작업·청능훈련·심리치료 교사라는 명칭을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 제14조 (특수교원 등의 자질 향상)

특수교육 교원들의 자질 향상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유능한 인재를 특수교육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유인책으로, 또한 특수교육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특수교육 교원들에게 봉급의 일정비율을 매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보충해야 한다. 그리고 '특수교원'이라는 용어는 사용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특수교육 교원'으로 바꾸어야 한다.

#### 제15조 (점자 도서관)

1991년 3월에 제정된 「도서관 진흥법」에서는 장애인에게 학습, 교양 등 도서관 봉사를 제공하는 도서관을 특수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법인·단체·개인이 특수 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 등의 기준을 갖추고 문화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의 점자 도서관은 도서관 진흥법의 특수 도서관에 해당된다. 점자 도서관의 시설·설비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특수 도서관은 문화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동일한 점자 도서관(특수 도서관)에 대해서 서로 상이한 법조문이 존재하게 되는 모순이 생기므로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 제16조 (시행령)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행 특수교육 진흥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1977년 제정 당시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태어난 이 법은 부분적인 개정만으로 장애학생들이 그들의 독특한 요구에 알맞는 교육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이보다 한 차원 높은 새로운 「특수교육법(가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70년대 중반, 특수교육의 증진을 위해 현행 '특수교육 진흥법'이 제정되었다면, 이제는 2000년대를 바라보는 한국특수교육의 미래를 위해 특수교육법이 새롭게 탄생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반교육과 관련 지을 수 있는 내용들은 통합교육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교육법」이나 「교육법 시행령」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교육법에 명기하기가 곤란한 항목들만 '특수교육법'에 제안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발표에서는 특수교육법 제정의 기본 방향과 특수교육법에 꼭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아울러 특수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법」이나 「교육법 시행령」에 어떤 항목들이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Ⅲ. 특수교육법 제정의 기본 방향

#### 1. 모든 장애학생은 무상으로 적절한 공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 9조에서 모든 국민은 그 능력에 따라 수학 할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하였다. 취학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교육권을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에 다니는 모든 아동들이 그들의 능력에 알맞는 교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그 아동들이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켰을 때 아동의 교육권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인차가 큰 장애 학생들을 아무런 계획없이 일반학급에 방치해 버린다면 실질적 교육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장애 학생들에게는 개인의 독특한 요구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장애 영역이나 정도에 관계없이 특수교육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모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2. 통합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이어야 한다.

장애인들이 사회적 평등을 얻는데는 일반인들의 올바른 태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일반학생들이 통합교육을 하게되면 장애학생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되고, 그 태도는 비교적 오래동안 지속된다. 이와 같이 통합교육은 장애인들에게 평등권을 주고 미래를 준비시켜 주며, 일반인들에게는 올바른 태도를 갖게 해 준다. 그러므로 장애 학생들의 교육은 가능한 한 일반 학생들과 더불어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 3. 장애유아의 진존능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신장, 촉진할 수 있도록 조기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인간이 갖고있는 여러가지 능력은 제각기 발달의 적기를 갖고 있는데 적기를 놓치면 학습의 효과가 보장되지 못한다. 특히, 장애가 있는 유아의 경우 조기교육이 더욱 중요하며, 예방 교육의 차원에서라도 조기교육은 강화되어야 한다.

#### 4.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직업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학교생활을 마친후의 성인기는 학령기에 비하여 2, 3배로 길다. 성인기나 노년기를 얼마만큼 건전하고 보람된 활동을 하느냐의 문제는 학령기에 얼마나 많은 준비를 시킬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 자아실현 및 발전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우므로 직업교육 및 생애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 장애가 가벼울수록 사회 통합적 측면에서 직업교육을 시키며 장애의 정도가 무거울수록 부분통합을 하여 경제활동을 가능케하고 생활을 윤택하게 하여 일반사회내의 오락을 즐기고 소비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 5. 자녀의 판별이나 특수교육 정책결정에 부모가 참여할 권리와 책임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수교육이 발전된 선진국을 보면 대부분 장애인 부모의 힘이 크게 작용을 했다. 자녀가 판별이나 배치에서 부당한 절차를 밟지 않도록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교육의 기회 균등이 일반아동에 비해 박탈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 나

를대로의 권익옹호를 위한 압력 단체로서 정책결정에 동참하는 것도 중요하다.

#### 6. 장애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적절한 개별화 지도를 실시하도록 한다.

특수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특수학생들에게는 그들의 능력에 알맞는 개별화 지도를 실시해야 한다. 개별화 지도에 사용되는 개별화 프로그램에는 아동의 현재 교육 능력과 상태, 장·단기 교수목표와 프로그램 시작시기와 지속시간이 있어야 하고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해서 적절한 객관적 척도와 평가 절차 및 일정등이 포함되어져야 한다.

### IV. 특수교육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1. 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

- 장애 학생은 유치원, 국민학교 및 중학교 과정을 반드시 교육시켜야 한다(의무교육).
- 모든 장애 학생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완전 무상교육을 받는다.
- 장애 학생의 취학 기회를 늘이기 위해 교육 기관을 늘인다.
  - 교육대학의 부속 국민학교와 사범대학의 부속 중학교에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 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에서는 반드시 부속 특수학교를 개설한다.
- 교육기관에 취학이 곤란한 중증 장애 학생의 가정이나 시설을 방문하여 필요한 교과지도, 훈련, 요육활동 등을 교육시켜야 한다.
- 학령장애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경제적 이유로 취학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통학비, 학교 급식비, 기숙사비, 수학여행비, 학용품 구입비 등의 교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2. 통합교육

-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임을 이유로 입학 지원 거부 및 입학 시험 합격자의 입학거부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18학급 이상의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특수교육 전담교사를 1명 이상 배치한다.
-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의 교직과정에 “특수교육 개론” 강화를 필수로 하고 현직 교사연수 및 자격 강습시에도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과목을 이수토록 한다.

#### 3. 조기교육

- 장애 유아들은 시·군 교육(구)청 특수교육과에 등록하여 관별 및 특수교육 기관의 배정을 받도록 한다.
- 특수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유치부를 설립해야 한다.
- 일반 유아원이나 유치원에 특수학급을 두되, 인건비와 운영비는 국가에서 지급한다.
- 취학전 장애 아동을 위한 조기교육 센터를 인가제로 전환하되 교사들의 인건비는 국가에서 보조한다.

#### 4. 직업교육

- 특수교육 기관의 설치·경영자는 특수교육 학생들이 그 능력에 따라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당해 학교에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에서 타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실업계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개설한다.
-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현장 실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내 기업체와 유대관계를 맺어 산학 협동체계를 구축한다.
- 고등부를 마친 학생들이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별로 국립특수학교내에 전문대학을 설치·운영한다.
- 장애 학생의 직업교육을 전담하는 실기교사를 대학에서 양성하여 배출한다.

#### 5. 부모참여

- 부당한 판별에 대해 학생의 부모와 후견인은 거부권을 지닌다.
- 각급 학교장은 정기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특수교육과 관련되는 정책 결정에는 반드시 학부모 대표를 참석시킨다.

#### 6. 개별화 지도

- 장애 학생의 교육은 개별화 지도를 원칙으로 한다.
- 장애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탄력성있는 교육과정을 작성한다.
- 개별화 학습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시설과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 개별화 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줄이며 장애 영역별로 다르게 규정한다. (교육법 시행령 176조에는 학급당 15명 이하로 되어있음)
- 특수학교의 운영은 무학년제의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 7. 행·재정 지원 체제

- 취학전, 국민학교 및 중학교의 장애 학생교육은 시·군교육(구)청 특수교육과에서 관내 모든 장애 아동들의 등록에서부터 판별, 배치 추수지도까지 특수교육에 관련되는 모든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시·군 교육(구)청 중심체제로 전환한다.
- 고등학교 이상에 재학중인 장애 학생의 교육은 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담당한다.
- 교육부에 특수교육과를 설치하여 법 시행과 특수교육에 관한 제반 활동을 계획, 관리, 시행하는 책임을 지도록 한다. 또한 이 부서에서는 특수교육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자문을 구한다.
-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 시설비, 실험 실습비, 직업보도비, 기숙사 운영비, 통학버스 운영비 및 교원의 봉급과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제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 특수교육 진흥비를 전체 교육비의 1.5%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현재는 0.44%)
- 특수교육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의무 주체는 당연히 국가이어야 함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 8. 특수교육 교원

- 특수교육 기관에는 요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두되 그 자격과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연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의 사기 양양을 위하여 봉급의 일정 비율을 특수교육 수당으로 가산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 V. 특수교육법 제정과 관련한 관계법규의 개정

### 1. 교육법에서

제 79조 (교원의 종별과 자격) '특수학교 교사'를 '특수교육 정교사(1급, 2급)와 특수교육 준교사'로 개정해야 한다. (개정사유: 특수교육 교사의 상위직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

「별표 1」의 교사 자격 기준에서도 특수교육 교사는 특수학교 내에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교사 자격 기준도 세분화 해야 한다.

「별표 2」에서 특수학교 교장, 교감은 중등학교 또는 국민학교 교장(교감) 자격증을 가진자로 되어 있다.

이 항목을 교장은 '특수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로 하고, 교감은 특수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자로 한다.

제 98조 '학령 아동이 불구, 폐질, 병약, 발육 불완전,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하기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삭제되어야 한다.

제 126조 실습학교 부설에 있어서, 특수교육과가 있는 대학은 특수학교를 의무적으로 부설하도록 한다.

### 2. 교육법 시행령에서

제 53조의 2. (시설·설비) 학교를 설치할 때 ( )학급 이상의 학교에서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 장애인용 화장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제 71조의 4. (학력고사) '지체부자유자에 대한 체력 검사'를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체력검사'로 개정한다.

제 102조 (취학의무의 유예 등) 삭제되어야 한다.

제 176조 (특수학교의 학급) '학생수는 학급당 15인 이하로 한다'를 '학급당 학생수는 15인 이하로 하며, 장애영역별 정도별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로 개정한다.

### 3. 교원자격 검정령 시행 규칙에서

제 2조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 과목) '맹, 농, 정신박약 및 지체부자유'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로 개정한다.

## VI. 맺는말

해마다 이맘때면 열리는 연례 행사인 '장애인의 날'이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와 요즈음 국내가 장애인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거리로 시끌 벅적하다. 정부와 각종 복지 단체에서 베풀어주는 잔치와 푸짐한 선물까지 주니 장애인들은 더 없이 좋은 날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장애인의 현실적 삶이나 인권 상황과는 무관하게 의례적으로 치러지는 장애인의 날을 보면 웬지 서글퍼진다. 주인공들은 뒷전에 물러나 있고 객들이 설치기 때문일까?

장애인의 재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부문일 것이다. 일부에서는 특수학교의 고등부까지 무상으로 교육을 시킨다고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도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무상교육도 무상교육 나름이지 교통비, 학습 준비물비, 과외 치료비 등 매달 장애 학생 밑에 들어가는 돈이 적지 않은데 무슨 무상교육인가? 10년 이상 건의를 해 온 특수교육의 숙원 사업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번째가 교육부내에 전담 기구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이다. 100만에 가까운 장애 학생의 교육을 교육부내의 연구사 1인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알까봐 두렵다.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단체에서 집요하게 건의를 했는데도 해결이 안되는 것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번에 제정하는 특수교육법으로 우리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이 더 빠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심한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입학하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상황은 어제 오늘만의 일만은 아닌데 이들이 특수학교에 적을 두지 못하면 어디로 가란 말인가? 가능하면 장애가 가벼운 학생을 선발하는 특수학교도 나무랄 수는 없다. 학급당 인원수를 10여명으로 채워서 가르치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 아닌가. 집 옆에 학교를 두고 원거리 통학을 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다. 일반학교에서도 심한 장애 학생이 얼마든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특수학교 이름이 붙은 통학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학교 다니는게 꿈이라는 어느 학부모의 소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법을 다듬어 보자. 장애 아동을 낳아 키우는 것도 서러운데 매달 몇 십만원 들여 조기교육 클리닉에 보내는 부모의 심정도 헤아릴 수 있고 학교 졸업 후에 직장에 바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직업교육을 시키는 특수교육법을 만들어 보자.

오늘 이 발표는 특수교육 진흥법 개정의 방향을 설정하는 조그마한 자료로서 출발신호에 불과하다. 한번 제정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므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각계 각층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신중하게 정리하여 우리 장애인의 복지와 권익증진에 밑거름이 되는 특수교육법이 되게 하자.

## ● 공대위는 올해 이렇게 일합니다 ●

### 공대위 사업은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정부의 정책부재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철저하게 소외되어왔고, 오직 시혜와 은정의 대상으로 규정되어 왔던 지난 날의 산적한 장애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장애단체와 사회단체 등 55여개가 모여 결성한 조직이다.

공대위는 올해 장애인의 교육권확보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인근주민의 거센 반발로 장애인 시설의 신축지연, 외곽이전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한편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대비하여 장애인문제를 제도적으로 풀기 위한 공약사업을 벌이는 등 3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해 공대위는 지난 4월 18일 '한국특수교육의 문제점과 법률적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특수교육의 일부 개정으로는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가 요원하다는 것을 인식, 특수교육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에 공대위는 '특수교육법제정을 위해 부모, 교사, 학생, 교수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매주 소위별 모임 속에서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이어 특수교육법 입법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두 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취합하는 한편 기초적인 시안을 만들었다.

이번에 개최되는 '특수교육의 이념정립을 위한 심포지움'은 앞으로 제정될 특수교육법의 가치와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제 단계로서 △특수교육의 대상은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통합교육의 범위는 △의무교육의 범위는 △부모는 장애어린이 교육의 어디까지 참여 할 것인가 △특수교육의 목적이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수단인가 △특수교육이 교육과 재활 중 어디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가 등 주로 특수교육의 이념을 정립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된다.

이어 현재 교육부에 상정되어 있는 한국특수교육협회의 특수교육진흥법개정안과 공대위 안을 묶어 '단일안'으로 만들기 위한 공청회를 오는 7월 18일 개최 할 예정이다. 이후 국회의원과의 정책면담 등을 통해 의원입법을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 장애인 시설 비량 끝 위기

최근 인근주민의 거센 반발로 장애인 시설의 신축지연, 외곽이전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어 장애인의 질국된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대한 편견이 인근주민들의 거부요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대위는 지난 5월 말까지 장애인 시설의 신축

지연, 외곽이전 사례를 조사하고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7월 말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시설문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첫 삽을 뜨자마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이 인근주민의 거센 반발로 중단됐다. 성동구청은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아닌 일반사회종합복지관으로 용도를 변경, 현재 건축설계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대위는 성동구청이 일반종합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의 차이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적 처리라고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지난 5일 성동구청에 보냈다. 특히 공대위는 성동의 문제는 향후 도시내 장애인시설 건립의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부심한 모습이다.

또한 강원도 횡성지역에 건립될 장애노인의 요양원 '루디아의 집'이 군청의 불허로 공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종로구 관훈동의 시각장애인의 수용시설인 '라파엘의 집'은 자녀교육과 땅값 운운하는 인근주민들의 투서로 밀려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처럼 장애인 시설의 '벼랑 끝' 위기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 대통령 선거를 능동적으로 준비

공대위는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약안건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공대위는 특히 이번 대통령선거를 장애인복지의 일대 획을 긋는 전환기로 삼고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오는 6월 말까지 각 단체의 대통령 공약안건을 받는 한편 장애영역별, 부문별 전문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선공약사업에 투입키로 했다. 현재 한국청각장애인복지회와 한국재활재단이 공약안건을 내놓았다. 또한 공대위는 지난 4월 ESCAP(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총회에서 결정한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장애인의 해'에 대한 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환으로이전 장애인의 해에 대한 결산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공약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 이밖에 공대위는

이밖에 공대위는 장애와 관련된 사회 제 문제들에 참여하고 있다.

정신보건법 제정에 대해 공대위는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이를 위해 각종 공청회 등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또한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폭력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문제를 들고 적극 가담키로 했다.

## ●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 고 문

김관석 목사(새누리신문 사장), 김기창 회장(한국농아복지회), 김석원 회장(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김성수 주교(대한성공회·한국장애인총연맹), 김응준 이사장(한국소아마비협회), 김학묵 회장(뇌성마비복지회), 문병기 회장(재활재단), 서광운 회장(한국장애자재활협회), 송건호 회장(한겨레신문), 송영욱 변호사(DPI회장), 송월주 스님(전 조계종총무원장), 이우정 최고위원(민주당·한국장애인총연맹), 이원순 회장(한국시각장애자복지회), 이정일 부회장(전남일보사), 이태영 총장(대구대), 지학순 주교(천주교), 홍창의 교수(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고문)

### 자 문

권도용 교수(한신대), 김 완 관장(청음회관), 김호준 회장(부산지체장애인협회), 김활용 목사(이수교회), 김현심 원장(삼육재활원), 박성구 신부(천주교 장애인복지협의회), 박수근 회장(한국맹인복지연맹), 박용수 이사장(한글문화연구원), 서경석 사무총장(경실련), 손봉호 교수(서울대), 신정식 원장(녹십자병원), 양금순 관장(서울장애자복지관), 유경운 원장(여수 애향재활병원), 윤석용 원장(장청 고문), 육병일 관장(한국점자도서관), 이철용 국회의원, 임정복 회장(자행회), 전익준 관장(서울정박자복지관), 정화원 회장(부산 장애인연합회), 조성모 회장(한국장애자복지시설협회), 조일묵 부회장(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주성오 관장(남부장애자종합복지관), 채규철 교수(한국장애인총연맹), 한승헌 변호사(한국장애인총연맹), 황연대 관장(정립회관), 황인철 변호사(한국장애인총연맹), 황 희 회장(대한정신박약자애호협회), 윤종구 교수(서울대병원 소아과), 정형석 회장(한국장애인선교연합회)

(가나다 순)

**위원장:** 김성재(한신대 교수, 한국장애인총연맹 공동대표)

**부위원장:** 심동섭(한국농아복지회 사무국장)

**대변인:** 이성재(변호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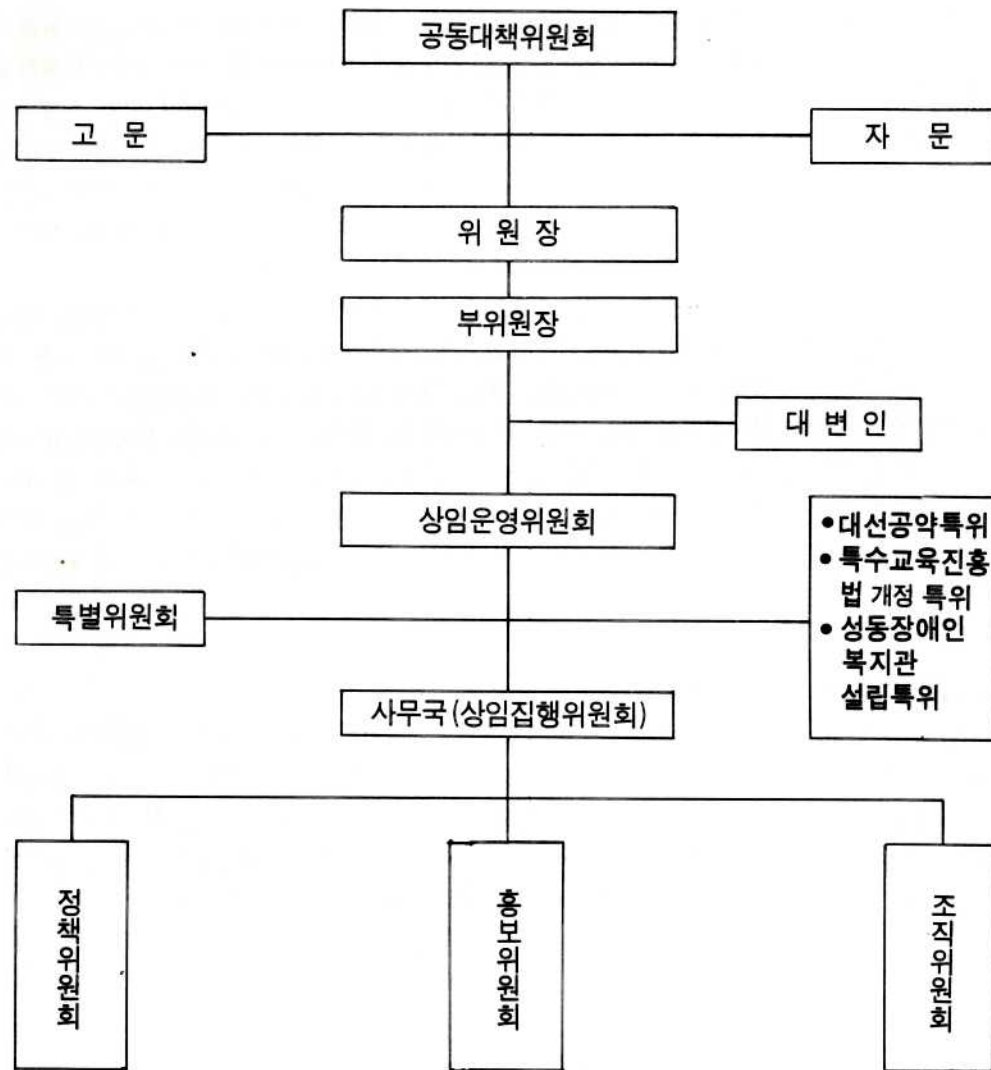
### 참가단체

국제키비탄클럽 한국본부, 대한정신박약자애호협회, 자행회, 한국농아복지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맹인복지협회, 한국보장구협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한국장애자복지시설협회, 충남장애자부모회, 한국장애자재활협회, DPI 한국지부, 한국장애인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립회관, 청음회관, 전국지체부자유대학생연합회, 전국특수교육학과연합회, 서울경인지역사회사업사회복지학과협의회, 한국가톨릭장애인협의회, 남북한장애인경기운동본부, 한국장애인문인협회, 한국장애인선교회, 한국맹인복지연맹, 한국점자도서관, 한국가톨릭맹인선교회, 한국약사재활협회, 서울장애인단체협의회, 한양대키비탄, 단대키비탄, 이대키비탄, 가톨릭의대키비탄, 점두레, 이대손지, 서울대손말사랑회, 중대손짓사랑회, 외대손말사랑회, 시설문제연구소, 교통장애인협회, 전국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 건설을 위한 준비모임, 베데스다선교회, 한국밀알선교단, 불교사회복지회, 원심회, 사랑의친구우리, 부름의전화, 전국자원봉사활동협의회, 서강대손짓사랑회, 한양대손말사랑회, 경희대손말사랑회, 사회복지촉진협의회, 한신대재활학과, 서울경인지역특수교사준비모임, 참우리, 삼마회, 장애우대학 1기생, 부산장애인연합회, 부산지체장애인협회, 부산지체장애인복지회, 부산장애인연합수송봉사단, 부산한국장애인고용복지협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상임운영위원회

교통장애인협회, D.P.I 한국지부, 부름의전화, 삼육재활원, 서울장애인선교연합회, 수화동아리연합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운동청년연합회주비위, 전국특수교육과학생연합회, 정립회관, 청음회관, 한국가톨릭장애인복지협의회, 한국농아복지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한국맹인복지연합회,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한국장애자재활협회, 한국장애인선교연합회, 한국재활재단, 한국장애인문인협회, 한국장애인총연맹

●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조직표 ●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결성문

지금 이땅의 4백만 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잘못된 인식 그리고 정부 당국의 정책부재로 의료, 교육, 취업 등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유린당하는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문제를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문제로 치부해 왔으나 이러한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그동안 실패를 거듭할 수 밖에 없었던 우리의 경험이 여실히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난 1980년 법관 임용 거부사태와 1989년 장애인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그리고 91년 천안 인애학교 설립에 이르기까지 이땅 장애인 복지의 획을 긋는 커다란 성과들을 이루어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4백만 장애인의 단결된 힘만이 우리의 요구를 올바르게 풀어갈 수 있다는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이제 장애인의 문제는 더이상 장애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풀어야 하는 공통의 문제이며 바로 이러한 인식하에 장애인과 장애인 제 단체에서는 현재 한국 장애인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극복해 모든 장애인이 더 이상 편견과 소외에 고통받지 않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한다.